공시송달 대상자

가칭)영동기숙형중학교 설립 사업에 편입된 귀 소유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협의를 요청하오니, 협의 기간 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 토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(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) 토지의 전부를 매수 요청할수 있으며,사업인정 이후에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협의기간	2016. 3. 7. ~ 2016. 4. 7.
협의장소	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
협의방법	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유권 이전협의 및 보상금 청구
보상하는 시기, 방법 및 절차	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계좌이체
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	붙임과 같음

보상액내역

일련번호	소재지	지번 (당초지번)	소유자	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면적 (당초면적) 또는 수량		단가(원/㎡)	보상액(원)	비고 (관계인)
1	영동군 황간면 신흥리	346	민병○	전		50.00	㎡	55,550	2,777,500	양천세무서, 강서세무서
2	영동군 황간면 신흥리	347	민병○	답		126.00	㎡	55,550	6,999,300	양천세무서, 양천구청 강서세무서
합계									9,776,800	